

신한은행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실제 계약은 「신한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」 특약, 거치식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1. 상품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신한은행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
- 상품특징 :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도입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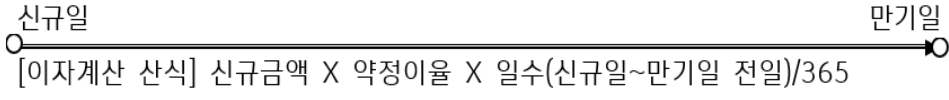
2. 거래조건

- 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과 비대면 채널등의 계좌상세조회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
상품유형	정기예금
거래방법	영업점,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
가입금액	제한 없음
계약기간	36 개월
세제혜택	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
이자지급시기	만기일시지급식 -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	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
기본 이자율 (2024.03.01 기준)	예금일(신규일 또는 재예치일)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(www.shinhan.com)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 <table><tr><th>기간</th><th>금리</th></tr><tr><td>36개월</td><td>연 2.04%</td></tr></table>	기간	금리	36개월	연 2.04%								
기간	금리												
36개월	연 2.04%												
약정 이자율 (2024.03.01 기준)	<table><tr><th>기간</th><th>금리</th></tr><tr><td>36개월</td><td>연 2.81%</td></tr></table> ※ 상기 약정 이자율은 매월 1 일 기준으로 변동되며, 실제 적용이율은 비대면 채널등의 계좌 상세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	기간	금리	36개월	연 2.81%								
기간	금리												
36개월	연 2.81%												
중도해지 이자율 (2024.03.01 기준)	예금일(신규일 또는 재예치일)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(www.shinhan.com)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◎ 중도해지이자율 산출 시 적용되는 기본이자율은 약정이자율과 상이하며 실제 중도해지이자율은 홈페이지(www.shinhan.com)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 ※ 일반중도해지이자율 확인 경로 신한은행인터넷홈페이지 > 금융상품 > 예금/신탁 > 상품안내 > 목돈굴리기 > 금리안내 > 금리자세히보기 ◎ 1 개월 미만 : 연 0.10% ◎ 1 개월 이상 : 기본이자율 X (1-차감율)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연 0.10%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.10% 적용) ※ 차감율(2024.03.01 현재) <table><tr><td>경과기간</td><td>1개월이상</td><td>3개월이상</td><td>6개월이상</td><td>9개월이상</td><td>11개월이상</td></tr><tr><td>차감율</td><td>80%</td><td>70%</td><td>30%</td><td>20%</td><td>10%</td></tr></table> ◎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기본이자율 X (1-차감율)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 연 0.10%)	경과기간	1개월이상	3개월이상	6개월이상	9개월이상	11개월이상	차감율	80%	70%	30%	20%	10%
경과기간	1개월이상	3개월이상	6개월이상	9개월이상	11개월이상								
차감율	80%	70%	30%	20%	10%								

특별중도해지	아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 1) 가입자의 퇴직,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 2)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(보증금)을 부담하는 경우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 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④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 년 이내에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 년 이내에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가입자(근로자)가 사회·자연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3)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③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수탁자의 사임 ⑤ 가입자 사망 4)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지급 사유 ①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②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5) 신한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이전 사유 6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3 조의 4 및 제 13 조의 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취소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
----------------------	--

	◎ 특별 중도해지이자율	
	신규(재예치) 계약기간	특별 중도해지이자율
	계약기간 12개월 이하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
	계약기간 24개월 이하	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
	계약기간 36개월 이하	▶ 경과기간 24개월 미만 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 ▶ 경과기간 24개월 이상 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24개월제 약정이자율
	계약기간 60개월 이하	▶ 경과기간 24개월 미만 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12개월제 약정이자율 ▶ 경과기간 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 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24개월제 약정이자율 ▶ 경과기간 36개월 이상 신규일(재예치일) 고시된 이 예금의 36개월제 약정이자율
※ 단, 『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지급 사유』 및 제 6 호 『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· 승인취소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』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 ※ 일단위 정기예금의 경우 계약기간 및 경과기간이 월 단위로 적용됨		
이자계산방법	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 (원미만 절사) 	
계약해지방법	◎ 퇴직연금시스템을 통해 생성 및 전달된 전문에 의해 수탁자가 해지거래를 요청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일괄 해지 처리 ◎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,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	
예금 해지시 불이익	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.	
일부해지	만기일 전영업일까지 2 회 일부해지 가능, 중도해지금리 적용 ◎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2 회까지 일부해지 가능 ◎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(DB)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	

	②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③ 퇴직연금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	
재예치	㉠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 조의 3 에 의해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. ㉡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 되며, 약정이자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. ㉢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	
예금자 보호여부	확정기여형(DC),개인형(IRP) 퇴직연금(보호) 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 인당 "5 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	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(비보호) 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통장발행	이 예금은 통장발행이 불가합니다.	
거래제한	1) 공동명의 : 불가 2) 담보등록, 질권설정 및 양도 : 불가	
위법계약 해지권	㉠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(주 1)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의 범위)에 위법계약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	

	◎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,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기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.(단, 계약종료시 행사불가) ◎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. (주1)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: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(제 17 조 제 3 항)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(제 18 조 제 2 항)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(제 19 조 제 1,3 항)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(제 20 조 제 1 항), 부당권유행위의 금지(제 21 조)
자료열람 요구권	◎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등 ◎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 범위가 기재된 자료열람요구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 ◎ 은행은 이 자료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 ◎ 은행은 위 자료를 10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(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는 5 년) 해당 보관기간내 열람이 가능합니다. ◎ 은행은 법령, 제 3 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3. 유의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기 전에 '금융상품설명서' 및 '약관'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- 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는 경우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
이 금융상품은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77-8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shinhan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<http://www.fcsc.kr>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